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실시 근거 마련 등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5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검토 의견 .....                            | 4  |
| 1. 총괄적 검토 .....                             | 4  |
| 가. 주요 내용 .....                              | 4  |
| 나. 법률 제정의 필요성 .....                         | 8  |
| 다. 관계 기관·단체 의견 .....                        | 13 |
| 2. 조문별 검토 .....                             | 21 |
|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 21 |
| 나.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 35 |
| 다. 재난보건심의위원회(안 제9조 및 제10조) .....            | 48 |
| 라.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 51 |
| 마. 보칙 및 벌칙(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 59 |



## I. 개요

###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7. 24.

(3) 회 부 일 : 2026. 7. 27.

### 2. 제안이유

현행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 및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 이후 재난 노출자에게 우울·불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와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등 신체적 건강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개별 재난별 임시지원이나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건강 영향 조사 및 추적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난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의 구조·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영향권 주민, 목격자 및 유가족 등 다양한 재난 노출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사례관리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재난 관련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자료 등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공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재난 이후 장기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난취약계층 우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추적·관리하며, 재난 노출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노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은 재난 노출자에 대하여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및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8조).
- 바. 재난 피해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재난 노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난보건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 Ⅱ. 검토 의견

### 1. 총괄적 검토

#### 가.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추적·관리하며, 재난 노출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총 5개 장 1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                                                                                                                                                                                                                                                                       |
|---------------------------------------------------------------------------------------------------------------------------------------------------------------------------------------------------------------------------------------------------------------------------------------------------------------|-----------------------------------------------------------------------------------------------------------------------------------------------------------------------------------------------------------------------------------------------------------------------|
|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p> <p>제2조(정의)</p>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제4조(재원의 확보)</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b>제2장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b></p> <p>제6조(재난건강영향평가)</p> <p>제7조(장기 추적조사)</p> <p>제8조(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b>제3장 재난보건심의위원회</b></p> <p>제9조(재난보건심의위원회)</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p> | <p><b>제4장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b></p> <p>제11조(재난 노출자 사례관리)</p> <p>제12조(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지정)</p> <p>제13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p> <p><b>제5장 보칙 및 벌칙</b></p> <p>제14조(비밀유지 의무)</p> <p>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p> <p>제16조(벌칙)</p> <p><b>부 칙</b></p> <p>제1조(시행일)</p> <p>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p> |
|---------------------------------------------------------------------------------------------------------------------------------------------------------------------------------------------------------------------------------------------------------------------------------------------------------------|-----------------------------------------------------------------------------------------------------------------------------------------------------------------------------------------------------------------------------------------------------------------------|

-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 “재난 노출자” 및 “재난취약계층”을 각각 정의하고(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노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재난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안

제3조 및 제4조), 질병관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노출자에 대한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6조),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재난 노출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이와 함께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두고(안 제9조 및 제10조),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노출자에게 보건의료 등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례관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을 재난보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 재난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                                                                                                                                                                                                                                                                                                                                                                                           |
|------------------------------|-------------------------------------------------------------------------------------------------------------------------------------------------------------------------------------------------------------------------------------------------------------------------------------------------------------------------------------------------------------------------------------------|
| 조 문                          | 주요 내용                                                                                                                                                                                                                                                                                                                                                                                     |
| 제1조(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추적·관리하며, 재난 노출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함</li> </ul>                                                                                                                                                                                            |
| 제2조(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재난</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li> <li><b>재난 노출자</b>: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재난 발생 당시 또는 그 이후 일정 기간 해당 재난의 영향권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등 환경적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재난의 구조·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현장의 목격자 및 유가족 등을 포함</li> <li><b>재난취약계층</b>: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및 난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li> </ul> |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노출자의 건강 상태 확인, 재난의 특성 및 보건학적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 지원 시책을 마련함</li> <li>재난 노출자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함</li> <li>재난 노출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li> </ul>                                                                                                                                       |
| 제4조(재원의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는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함</li> </ul>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li> </ul>                                                                                                                                                                                                                                                                   |
| 제6조(재난건강영향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li> <li>* ① 주요 신체 및 정신질환 발생 현황과 변화, ②의료기관 이용 실태, ③재난의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④재난취약계층의 건강 특성 등</li> <li>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li> </ul>                                |
| 제7조(장기 추적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재난보건심의위원회가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재난 노출자에 대하여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li> <li>* ① 집단 간 주요 질환 발생·악화 및 사망의 차이, ②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정신건강 상태 및 삶의 질 변화, ③재난 노출과 특정 건강결과 간 인과관계 및 위험요인·보호요인 분석, ④ 재난 노출자의 의료이용·복지이용 패턴 변화 등</li> </ul>                                                                            |
| 제8조(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사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li> </ul>                                                                                                                                                                                                                                                               |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                                                                                                                                                                                                                                                                                                                                                                                                                                     |
|------------------------------|-------------------------------------------------------------------------------------------------------------------------------------------------------------------------------------------------------------------------------------------------------------------------------------------------------------------------------------------------------------------------------------------------------------------------------------|
| 조 문                          | 주요 내용                                                                                                                                                                                                                                                                                                                                                                                                                               |
|                              | <p>* ①재난 노출자의 인적 사항 및 노출 유형·기간·강도 등 노출 특성에 관한 정보, ②재난건강 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③재난 노출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④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사례관리 기록, ⑤재난 유형별 환경·기상·대기오염 등 재난 관련 노출 지표에 관한 정보 등</p> <p>■ 질병관리청장은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p> <p>* ①주민등록번호, ②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③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④암등록통계 사업 및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⑤응급환자의 내원 및 응급의료 제공 현황에 관한 자료, ⑥ 구급활동 및 이송 현황에 관한 자료, ⑦재난 피해 보고 및 복구 지원 내역 등</p> |
| 제9조(재난보건심의위원회)               | <p>■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둠</p> <p>* ①재난건강영향평가의 기본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장기 추적조사의 대상 재난 및 집단 선정, 기간, 조사방법, 주요지표 등에 관한 사항, ③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p>                                                                                                                                                                                                                                      |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p>■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p>                                                                                                                                                                                                                                                                                                                                                                                         |
| 제11조(재난 노출자 사례 관리)           | <p>■ 질병관리청장 등은 재난 노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p> <p>■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둘 수 있음</p>                                                                                                                                                                                                                                                                                                   |
| 제12조(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지정)          | <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례관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재난보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p> <p>* ①지역보건의료기관, ②정신건강복지센터, 국공립 정신병원, ③공공보건의료기관 등</p> <p>■ 재난보건 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p>                                                                                                                                                                                  |
| 제13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 <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p>                                                                                                                                                                                                                                                                                                                                                                               |
| 제14조(비밀유지 의무)                | <p>■ 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 종사자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p>                                                                                                                                                                                                                                                                                                                                                                |
|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p>■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에 참여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p> <p>* ①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②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③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④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⑤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⑥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p>                                        |
| 제16조(벌칙)                     | <p>■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건강영향평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p> <p>■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p>                                                                                                                                                                                                                                                                     |
| 부칙 제1조(시행일)                  | <p>■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p>                                                                                                                                                                                                                                                                                                                                                                                                 |
| 부칙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p>■ 재난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음</p>                                                                                                                                                                                                                                                                                                                                                                          |

## 나. 법률 제정의 필요성

### 1) 재난 관련 현행 법률 체계

□ 재난 관련 현행 법률 체계는 재난 발생 당시의 응급의료 및 구호, 재난 이후의 심리회복 지원 등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고, 세월호참사, 10·29이태원참사, 12·29여객기참사 등 개별 대규모 참사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 등 보다 강화된 건강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재난 관련 개별 법률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관리체계, 긴급구조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면서,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 등 일부 건강·보건 관련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다음으로, 「재해구호법」은 이재민<sup>1)</sup> 등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호물자 제공,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의료지원 등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재해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방역, 위생지도 및 심리회복지원 등의 보건·건강 관련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1)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다음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재해위험 관리 및 피해경감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경감과 관련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구조·복구·치료·수습 등 현장대응업무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심리평가·상담·치료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재난 심리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한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개별 참사 관련 특별법은 해당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보장·피해구제 및 지원, 재발방지와 공동체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심리상담·정신질환 검사·치료 등 건강·보건 관련 지원 및 피해자 지원대책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은 감염병의 예방·관리,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치료 및 재난 시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재난 발생 시 감염병 관리, 응급처치·이송, 재난의료 지원 및 환자 진료 등 건강·보건 분야의 대응 근거를 두고 있음.

**< 재난 관련 주요 법률 규율 사항 >**

| 법률                               | 주요 규율 사항                                                                              | 건강·보건 관련 사항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관리체계를 확립,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긴급구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지원 등 재난안전관리 전반을 규율                   | 재난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등                                              |
| 「재해구호법」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일시대피자 등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임시주거, 급식·생활필수품 제공, 재해구호계획·구호기관 및 심리회복지원체계 등을 규율 | 구호의 종류로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방역, 위생지도 및 심리회복지원, 의료지원반·감염병 관리반·위생지도반 및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등   |
| 「자연재해대책법」                        | 태풍·홍수·호우·대설·가뭄·폭염·한파 등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복구, 재해영향평가, 위험지역 관리 및 피해경감 대책 등을 규율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관련 조사·연구 등 실시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을 규율                    |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현장대응업무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등 |
| 참사 관련 개별 법률                      |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보장·피해구제 및 지원, 재발방지와 공동체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심리상담·정신질환 검사·치료 등 건강·보건 관련 지원 및 피해자 지원대책               |

## 2) 법률 제정의 필요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률은 주로 재난 발생 당시의 구조·구호·응급의료, 재난 이후의 심리회복 및 특정 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난의 유형과 관계없이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 영향권 주민, 구조·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등 다양한 재난 노출자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을 장기간 추적·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법적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한편, 최근 세월호참사, 10·29이태원참사 및 12·29여객기참사 등 대규모 참사에 대해서는 개별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의료지원·심리치료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입법례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은 특정 재난이 발생한 이후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마련되는 사후적·개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재난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강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지원을 받기 어렵고, 개별 특별법마다 적용 대상과 지원의 범위 및 내용이 달라져 재난 노출자에 대한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별 법률의 적용 여부나 특별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재난 노출자의 건강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보건관리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일반적·상시적인 법적 기반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재난 발생 직후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거나 지속될 수 있고, 개별 재난별로 건강정보를 단절적으로 관리할 경우 건강영향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활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난 노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법안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정신건강증진법」 등에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의료·심리·보건지원에 관한 제도를 이미 두고 있고, 개별 대규모 참사에 대해서도 특별법으로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의 보완이나 관련 제도 간 연계 강화를 넘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도 제정안에 따라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재난과 재난 노출자의 범위 및 선정 기준, 재난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권한과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존 재난 관련 제도와의 연계체계를 구체화하고,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대상 및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등 법체계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 관계 기관·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건강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재난 노출자에 대해 건강상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나,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기존 재난 지원체계와의 정합성을 위해 적용 재난 및 사업대상의 구체화, 관계 기관 자료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기존 지원체계와의 역할 조정 등 일부 규정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보건복지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개별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재난안전법」은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국가트라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질병관리청 중심의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기존 법률과 중복되므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소방청) 안 제6조의 재난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자료제공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관별 보유자료의 특성 및 활용목적에 고려한 자료제공 범위의 구체화가 필요하고, 특히 119구급활동정보에는 환자의 증상·활력징후·처치내용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8조의 재난보건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범위가 ‘구급 활동 및 이송현황’으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급활동 내역 중 환자의 활력징후·증상·처치내용 등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되 구체적인 항목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안 제16조제2항의 벌칙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관 간 자료제공 협의의 성격과 자료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 안 제9조 및 제10조의 재난보건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에서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통합 또는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하더라도 존속기한(5년)을 두도록 하고 있는바,

재난보건심의위원회는 재난건강영향평가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행정안전부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재난안전법), 고용노동부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필수업무종사자법) 등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므로,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제한한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취지에 따라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필요 시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자문기관(자문위원회 등)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 제14조의 비밀유지 의무와 안 제16조의 벌칙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및 제71조에서 이미 벌칙을 규정(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

하 벌금)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벌칙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수위에 비해 낮아 법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의 적용 관계를 벌칙 조항에서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대한의사협회) 안 제8조 및 제12조는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D-MHIS, Disaster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기존 재난 정신건강 지원체계 및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안 제8조 등은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재난보건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진료기록, 투약정보, 기저질환, 건강보험·건강검진자료, 응급의료 이용 및 사망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 조사에 필요한 정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활용하도록 하고, 정보의 수집·연계 대상과 범위,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함.

#### < 관계 부처 등 의견 >

| 부처명   |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                                                                                                                                                                                                                                                                                                                                                                                                                                                                                                                                                                                                                                                                                                                                                                                                                                                                                                                                                                                                                                                                                                         |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추적·관리하며, 재난 노출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li> <li>○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개별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li> <li>○ 「재난안전법」은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li> <li>○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li> <li>○ 제정안은 질병관리청 중심의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기존 법률과 중복되므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li> <li>○ 재난 노출자를 정의에 직접 피해자 외에 '영향권 거주자·근무자', '현장 목격자', '유가족'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재난 노출'의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li> <li>○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서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고, 질병청장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의견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li> </ul> |

| 부처명   |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                                                                                                                                                                                                                                                                                                                                                                                                                                                                                                                                                                                                                                                                                                                            |
|-------|-----------------------------------------------------------------------------------------------------------------------------------------------------------------------------------------------------------------------------------------------------------------------------------------------------------------------------------------------------------------------------------------------------------------------------------------------------------------------------------------------------------------------------------------------------------------------------------------------------------------------------------------------------------------------------------------------------------------------------------------|
| 소방청   | <p>○ (안 제6조)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제공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관별 보유자료의 특성 및 활용목적 등을 고려한 자료제공 범위의 구체화 필요</p> <p>- 특히 119구급활동정보에는 환자의 증상·활력징후·처치내용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제공할 필요</p> <p>※ (제5항 신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범위·항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p>○ (안 제8조) 자료의 수집 범위가 '구급활동 및 이송현황'으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구체화가 필요함</p> <p>- 구급활동 내역 중 환자의 활력징후·증상·처치내용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되, 구체적인 항목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 재난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건강영향의 조사·평가와 장기 추적조사</p> <p>※ (제3항 제6호 수정)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급활동 및 이송 현황에 관한 자료 →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활동 내역 중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항목</p>                                                                                                                                                                                                                                                                                                                                                                |
|       | <p>○ (안 제16조) 재난보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함</p> <p>- 다만,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관 간 자료제공 협의의 성격과 자료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p> <p>- 특히 자료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미제출을 형사처벌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또는 적용 대상의 조정 필요</p> <p>※ (제2항) 삭제</p>                                                                                                                                                                                                                                                                                                                                                                                                                  |
| 행정안전부 | <p>○ (안 제9조 및 제10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에서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p> <p>-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통합 또는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하더라도 존속기한(5년)을 두도록 하고 있음</p> <div data-bbox="395 1630 1385 191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div> <p>○ 제정법안의 '재난보건심의위원회'는 재난건강영향평가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행정안전부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재난안전법), 고용노동부의 필</p> |

| 부처명                   |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                                                                                                                                                                                                                                                                                                                                                                                                                                                                                                                                                                                                                                                                                                                                                                                                                                                                                                                                                                                                                                                                                                              |
|-----------------------|---------------------------------------------------------------------------------------------------------------------------------------------------------------------------------------------------------------------------------------------------------------------------------------------------------------------------------------------------------------------------------------------------------------------------------------------------------------------------------------------------------------------------------------------------------------------------------------------------------------------------------------------------------------------------------------------------------------------------------------------------------------------------------------------------------------------------------------------------------------------------------------------------------------------------------------------------------------------------------------------------------------------------------------------------------------------------------------------------------------------------|
|                       | <p>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필수업무종사자법) 등과 기능이 유사·중복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제한한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취지에 따라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필요 시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 필요</li> </ul> <p>○ 또한,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자문기관(자문위원회 등)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br/>서 필요한 때에는 <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b>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br/>· 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b>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b></p> </div> <p>※ (제9조 및 제10조) 삭제</p>                                                                                                                                                                                                                                                                                                                                                                                                                                                                                                                                                                                                |
| <b>개인정보<br/>보호위원회</b> | <p>○ (안 제14조 및 제16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및 제71조에서 이미 규정(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제정안의 벌칙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수위에 비해 낮아 법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필요</li> </ul> <p>※ (제16조) ---. 이 경우 비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누설 및 그 처벌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p>                                                                                                                                                                                                                                                                                                                                                                                                                                                                                                                                                                                                                                                                                                                                          |
| <b>대한<br/>의사협회</b>    | <p>○ (안 제8조 및 제12조) 기존 재난 정신건강 지원체계 및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중복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D-MHIS, Disaster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도 운영되고 있음</li> <li>- 따라서 별도의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존 시스템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현장에서 동일한 정보를 이중으로 입력·관리·보고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li> <li>- 이에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기존 재난 정신건강 지원체계 및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사 정보의 중복 수집·입력 및 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li> </ul> <p>○ (안 제8조)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연계 최소화 및 보호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제8조 등에 따라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재난보건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진료기록, 투약정보, 기저질환, 건강보험·건강검진자료, 응급의료 이용 및 사망 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음</li> <li>- 특히 재난 노출자의 범위가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 영향권의 거주자·근무자, 구조·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현장 목격자 및 유가족 등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장기 추적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음</li> <li>- 따라서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에 필요한 정보는 목적 달성에 필</li> </ul> |

| 부처명 |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                                                                                                                                                                                                                                                                                                                                                                                                                                                                                                                                                                                                                                                                                                                                                                                                                                                                                                                                                                                                                                                                                                                                                                                                                                                                                                                                                                               |
|-----|--------------------------------------------------------------------------------------------------------------------------------------------------------------------------------------------------------------------------------------------------------------------------------------------------------------------------------------------------------------------------------------------------------------------------------------------------------------------------------------------------------------------------------------------------------------------------------------------------------------------------------------------------------------------------------------------------------------------------------------------------------------------------------------------------------------------------------------------------------------------------------------------------------------------------------------------------------------------------------------------------------------------------------------------------------------------------------------------------------------------------------------------------------------------------------------------------------------------------------------------------------------------------------------------------------------------------------------------------------------------------------------------|
|     | <p>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활용하도록 하고, 정보의 수집·연계 대상과 범위,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 (안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자료제공 의무 및 관련 제재 규정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위해 보건의로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보유한 민감한 개인진료정보 등을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자료의 확인·추출·정리·제공 등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자료의 제공은 의료기관에 일률적인 제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관계 기관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이 자료의 성격과 제공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재난보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건강보험·건강검진자료, 의료급여자료, 암정보, 응급의료자료 등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의 수집·연계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li>- 아울러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전제로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li> </ul> <p>○ (안 제12조) 의료기관의 역할 명확화 및 적정 보상체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재난보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례관리, 건강평가, 자료 제공 및 장기 추적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의료기관의 역할·책임, 이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li> <li>- 재난 노출자의 장기적인 건강관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별도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진료·관리 및 행정업무를 부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li> <li>- 따라서 재난보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는 의료기관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료 제공·건강평가·추적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력 및 행정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

자료: 질병관리청

## 2. 조문별 검토

###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안 제1조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추적·관리하는 한편, 재난 노출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재난”, “재난 노출자”,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각각 정의하고 있음.

이와 함께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노출자의 건강 상태 확인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국가가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사업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안 제5조는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추적·관리하며, 재난 노출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 노출자”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재난 발생 당시 또는 그 이후 일정 기간 해당 재난의 영향권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등 환경적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재난의 구조·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현장의 목격자 및 유가족 등을 포함한다.

3. “재난취약계층”이란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및 난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노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재난의 특성 및 보건학적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노출자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노출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의 확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①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②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추적·관리하며, ③재난 노출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 제6조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재난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재난 노출자의 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추적·관리하기 위한 장기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지정·지원 및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보건의료 및 정신

건강 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제정안은 위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안 제8조에서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난보건심의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 및 관련 규정 >

| 구분                          | 구체적 사업(관련 조문)                                                        | 공통 지원 체계                                          |
|-----------------------------|----------------------------------------------------------------------|---------------------------------------------------|
|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에 대한 체계적 조사·평가  | 재난건강영향평가 실시(안 제6조)                                                   | 재난보건 정보시스템<br>(안 제8조),<br>재난보건심의위원회<br>(안 제9·10조) |
| 장기적인 건강 변화의 추적·관리           | 장기 추적조사 실시(안 제7조)                                                    |                                                   |
| 필요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 |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안 제11조),<br>재난보건 수행기관 지정(안 제12조),<br>재난취약계층 우선지원(안 제13조) |                                                   |

- 이와 같이 안 제1조는 제정안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하 조문에서도 이를 구체화하는 주요 제도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조항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조는 재난 노출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규정은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지정·지원 및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안 제11조는 사례관리를 통하여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2조는 사례관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정안에서 구체적인 보건의료 또는 복지서비스의 종류·내용이나 직접적인 제공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목적조항 중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규정은 제정안의 구체적인 규율 내용에 비하여 다소 확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실제 내용에 맞추어 이를 “복지서비스의 연계·지원”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 정의(안 제2조)

□ (재난) 안 제2조제1호는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태풍·홍수·폭염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붕괴·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재난이 제정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3조제1호<sup>2)</sup>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 다음, 이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음.
- 자연재난은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함. 「재난안전법」에서는 태풍·홍수·호우 등 전통적인 풍수해뿐만 아니라 폭염·한파·가뭄·황사·조류 대발생, 화산활동 및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까지 폭넓게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을 포함시켜 새로운 유형의 자연현상도 포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회재난은 기본적으로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나 감염병 확산,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 사회적·기술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함. 「재난안전법」에서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sup>2)</su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미세먼지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있음.

- 제정안이 “재난”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의 개념과 동일하게 정의한 것은 재난 관련 법체계에서 동일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난의 유형에 따라 제정안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특히 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고, 같은 유형의 재난이라도 노출되는 위험요인이나 피해 양상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재난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다양한 재난 유형을 포괄하도록 하는 것이 제정안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제정안은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재난 노출자”와 “재난취약계층”을 정의하면서 재난의 규모나 유형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와 연계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례관리·수행기관 지정·취약계층 우선지원에도 별도의 재난 범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달리 안 제6조의 재난건강영향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 중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7조의 장기 추적조사도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일부 제도에

서는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재난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양한 재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범위가 “재난 노출자” 및 “재난취약계층”의 개념과 결합될 경우 제정안에 따른 조사·관리 및 지원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재난의 정의 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개별 제도의 성격과 건강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조문에서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대상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난 노출자) 안 제2조제2호는 “재난 노출자”를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당시 또는 그 이후 일정 기간 재난의 영향권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등 환경적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구조·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현장의 목격자 및 유가족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재난 당시 직접적인 생명·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을 목격하거나 구조·구호·수습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재난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발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난 발생 당시의 직접적인 피해 여부만을 기준으로 건강관리 대상을 한정할 경우 재난으로 인한 건강위험을 충분히 파악·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특히 제정안은 재난 피해에 대한 사후적 보상보다는 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건강상 피해가 확인된 사람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한 노출로 향후 건강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관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이 재난 노출자의 범위를 직접적인 생명·신체상의 피해자에 한정하지 않고 목격자, 구조·구호 및 수습 활동 참여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한 것은 재난 건강관리의 예방적·지속적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제정안은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재난과의 관련성이나 노출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넓게 해석되어 재난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건강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람까지 이에 포함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재난의 유형 및 규모, 유해요인의 특성, 노출의 정도·기간 및 건강영향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거나, 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

업별로 재난 노출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재난 노출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일부 법률은 직접적인 생명·신체상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유가족, 구조·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목격자 등 직·간접적으로 참사 등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도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 피해자 등 범위 확대 관련 입법례 >

| 법률                                         | 대상 범위 등 관련 규정                                                                                                                                                                                                                                                                                                                                                                                                                                                                                                                                                  |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p> <p>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b>유가족</b>")이라 한다)</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b>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b></p> <p>1) 10·29이태원참사 당시 <b>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b>(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p> <p>2) 10·29이태원참사 당시 <b>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b></p> <p>3) 그 밖에 <b>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b></p> |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희생자"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p> <p>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p> <p>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b>유가족</b>")이라 한다)</p> <p>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b>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b></p>                                                                                                                                                                                                                                |

| 법률                              | 대상 범위 등 관련 규정                                                                                                                                                                                                                                                                                                                                                                                                                                                                                                                                                                             |
|---------------------------------|-------------------------------------------------------------------------------------------------------------------------------------------------------------------------------------------------------------------------------------------------------------------------------------------------------------------------------------------------------------------------------------------------------------------------------------------------------------------------------------------------------------------------------------------------------------------------------------------|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li> <li>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li> <li>나. <u>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u></li> <li>다. <u>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u></li> <li>라.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b>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b></li> </ol> </li> </ol> |
|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p>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재민</li> <li>2. 일시대피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li> </ol> <p>「재해구호법 시행령」</p> <p>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u></li> <li>2. 재해 현장에서 <u>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u></li> <li>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b>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b></li> </ol>                      |

□ (재난취약계층) 안 제2조제3호는 “재난취약계층”을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및 난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정안이 “재난취약계층”을 정의한 것은 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이 연령, 신체적 상태, 경제적 여건 및 의료접근성 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고,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사례 관리에 관한 별도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현행 「재난안전법」 제3조제9호의3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범위와 상당 부분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재난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할지 또는 안 제2조제1호의 규정과 동일한 형식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할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2조제3호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열거하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미가 열거된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대상을 추가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3)</sup>
- 추가적으로, 안 제2조제3호는 재난에 대한 실제 노출 여부를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3)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특히 취약한 사람으로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난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재난 노출자 중 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재난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재난 발생 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계층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정안 제2조제3호가 재난취약계층을 재난 노출자로 한정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법문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3) 재원의 확보(안 제4조)

- 안 제4조는 재난 노출자의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른 각종 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제정안은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안 제11조),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원(안 제12조제2항),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안 제13조) 등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안 제4조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할 책무를 국가에만 부과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사업의 수행 주체와 재원 확보 책임의 범위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지방자

치단체가 직접 사례관리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의 시행 수준이나 지원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제정안에 따른 사업이 향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가 조달될 수 있음.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기준보조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제정안의 규율체계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5조)

□ 안 제5조는 재난 노출자의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안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노출자의 보건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재난의 유형이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재난에 노출된 사람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난 노출자의 보건관리 등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만을 규정할 경우 양 법률의 적용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난 노출자의 보건관리라는 특정 영역을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영역에서는 제정안이 「재난안전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 반면, 제정안에서 정하지 않은 재난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나.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안 제6조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노출자의 신체 및 정신질환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 제7조는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아 재난보건심의위원회가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재난 노출자에 대하여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안 제8조는 재난건강영향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및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재난건강영향평가)** ①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난건강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노출자의 주요 신체 및 정신질환 발생 현황과 변화
2. 재난 노출자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
3. 재난의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4. 재난취약계층의 건강 특성
5. 그 밖에 재난 노출자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의견

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결과 공표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장기 추적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아 제9조에 따른 재난보건심의위원회가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재난 노출자에 대하여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기 추적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노출자와 비노출자 또는 노출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주요 질환 발생·악화 및 사망의 차이

2. 재난 노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정신건강 상태 및 삶의 질 변화

3. 재난 노출과 특정 건강결과 간 인과관계 및 위험요인·보호요인 분석

4. 재난 노출자의 의료이용·복지이용 패턴 변화

5. 그 밖에 장기 건강영향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 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 노출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난건강영향평가, 제7조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 및 제11조에 따른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1. 재난 노출자의 인적 사항 및 노출 유형·기간·강도 등 노출 특성에 관한 정보

2.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재난 노출자의 진료 기록, 투약 정보, 기저질환, 응급의료 이용 및 사망 정보 등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4. 제12조에 따른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사례관리 기록

5. 재난 유형별 환경·기상·대기오염 등 재난 관련 노출 지표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질병관리청장은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3.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4.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내원 및 응급의료 제공 현황에 관한 자료

6.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급활동 및 이송 현황에 관한 자료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 보고 및 복구 지원 내역
8. 그 밖에 재난보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④ 질병관리청장은 재난정보 보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질병관리청장은 재난정보 보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재난건강영향평가(안 제6조)

- 안 제6조의 재난건강영향평가는 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이 재난의 유형·규모, 노출 정도 및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사후적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재난 노출자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보건관리 및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현행 법체계에서도 특정 요인에 따른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음. 「보건의료기본법」 4)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4)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며, 평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보건 의료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환경보건법」<sup>5)</sup>은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영향 우려지역 주민이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 등에 대한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현행 법령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종류 >

| 구분                        | 근거법령                 | 실시 주체                    | 대상                                      | 주요내용                                                           |
|---------------------------|----------------------|--------------------------|-----------------------------------------|----------------------------------------------------------------|
| 기후보건<br>영향평가              | 「보건 의료기본법」<br>제37조의3 | 질병<br>관리청장               |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br>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 유형·특성, 관련 질병의<br>발생 추이·진료경과, 성별·연령별·<br>지역별 분포, 취약계층 영향 등 |
| 건강영향항목<br>추가·평가           | 「환경보건법」<br>제13조      | 관계 행정기관,<br>사업자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br>계획·개발사업                   |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br>영향을 환경영향평가의 검토·평가<br>항목에 추가               |
| 환경 관련<br>건강피해의<br>건강영향 조사 | 「환경보건법」<br>제15조      | 기후에너지<br>환경부장관 등         | 환경유해인자 노출<br>민감 계층, 건강영향<br>우려가 큰 지역 주민 |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br>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 필<br>요 시 역학조사              |
| 석면 관련<br>건강영향조사           | 「석면피해구제법」<br>제47조    | 기후에너지환<br>경부장관 및<br>지자체장 | 석면광산 등이 있었던<br>지역의 현재·과거<br>거주자 등       |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 실시                                              |

#### 5)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이하 생략)

□ 이와 같은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재난이라는 특정 요인으로 인하여 특정 집단이 공통된 건강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 건강영향을 별도의 제도적 절차를 통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보건·환경 분야의 건강영향평가 체계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안 제6조가 질환 발생 현황, 의료기관 이용 실태, 재난의 특성에 따른 건강영향 및 재난취약계층의 건강 특성 등을 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사례관리 및 건강지원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재난건강영향평가는 평가 대상 재난의 범위, 현행 유사 건강영향평가 제도와의 중첩 가능성, 설문·건강 조사 신설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먼저, 재난건강영향평가는 평가 실시 여부와 대상 범위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규모 및 행정·재정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 대상이 되는 재난의 규모와 유형, 평가의 실시기준·시기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존의 기후보건영향평거나 환경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과

동일한 사건 또는 위해요인이 평가원인이 되고, 동일한 지역 주민이나 취약계층이 조사대상이 되며, 질환 발생이나 의료이용 등 평가항목이 유사하고, 동일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경우와 같이 평가 대상이나 평가내용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간 연계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난건강영향평가와 현행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중첩 가능성 >**

| 중첩 사례                       | 기존 제도                  | 중첩 가능 부분                                                            |
|-----------------------------|------------------------|---------------------------------------------------------------------|
| 폭염·한파·가뭄·호우 등<br>기후 관련 재난   | 「보건의료기본법」상<br>기후보건영향평가 | 기후 관련 재난(자연재난)에 따른 관련 질환 발생·변화, 의료이용, 취약계층 건강영향, 지역별 영향 등           |
| 환경오염사고 등<br>환경유해인자 관련<br>재난 | 「환경보건법」<br>제15조 건강영향조사 | 환경오염사고(사회재난)에서 동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해인자 노출과 질환 발생의 관련성, 건강피해, 취약집단 등을 조사 |

- 추가적으로, 재난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반드시 재산·인명피해 등 외형적인 재난의 “규모”에만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유해화학물질·대기오염물질 등 특정 건강위험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장기적인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바,

재난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을 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으로 정하기보다는 재난의 규모, 유형, 유해요인

의 종류·노출수준·지속기간, 재난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및 장기적인 건강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설문·건강조사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본법」<sup>6)</sup>은 기후보건영향평가와 별도로 필요한 기초자료와 통계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제정안은 자료 제공과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재난 노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건강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정신건강 상태나 재난 노출 정도 등 기존 행정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에 필요한 설문·건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그 대상을 “필요한 자료”로 규정하면서 관계 기관에 사실상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내역, 건강검진자료,

---

6)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신건강 관련 자료 등 개인의 건강정보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바, 법률상 처리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환경보건법」<sup>7)</sup>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규정을 두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건강검진자료, 암등록자료, 질병·사인 통계자료, 건강검사기록, 의료급여자료 등 요청 가능한 주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그 외 안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는 평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각각 ‘재난취약계층의 건강 특성’과 ‘그 밖에 재난 노출자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난취약계층에 미치는 건강영향’과 ‘그 밖에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7) 「환경보건법」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 장기 추적조사(안 제7조)

□ 안 제7조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는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아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재난보건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재난 노출자에 대하여 ①집단 간 질환 발생·악화 및 사망의 차이, ②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정신건강 및 삶의 질 변화, ③재난 노출과 건강결과 간 인과관계 및 위험·보호 요인, ④의료·복지이용 패턴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재난 노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조치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하여 노출집단과 비노출집단 간 질환 및 사망의 차이, 시간 경과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 재난 노출과 건강결과 간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재난의 장기 건강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재난 대응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와 함께 안 제7조는 장기 추적조사의 대상을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고 재난보건심의위원회가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로 한정하여 안 제2조제2호<sup>8)</sup>가 재난 노출자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정의하고

<sup>8)</sup>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별 재난 노출자 또는 일정한 노출집단 중 누구를 장기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안 제7조제1항은 장기 추적조사를 ‘재난 노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비노출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장기 추적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항에서 정한 조사대상과 제2항의 조사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비노출자를 비교집단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 그 조사 또는 자료 활용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장기 추적조사는 건강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안 제6조제4항의 자료제공 요청권은 ‘재난건강영향평

---

2. “재난 노출자”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재난 발생 당시 또는 그 이후 일정 기간 해당 재난의 영향권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등 환경적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재난의 구조·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현장의 목격자 및 유가족 등을 포함한다.

가’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장기 추적조사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장기 추적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제공 요청의 근거, 개인정보의 처리·연계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7조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결과 등에 따라 재난 노출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의 내용이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동 규정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근거인지 아니면 건강검진·의료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지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정안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와 유사한 입법례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sup>9)</sup> 및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7조제3항<sup>10)</sup>은 각각 장기 추적 연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9)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②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③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 3)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8조)

-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관리는 재난 발생 당시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이후 장기간에 걸친 질환의 발생·악화, 의료이용 및 건강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특히 재난건강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결과, 재난 노출자의 인적사항과 노출 특성, 진료 및 건강검진자료, 응급의료 및 구급활동 정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안 제8조에 따른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은 재난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사례관리 및 보호·지원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연계·분석·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다만, 안 제8조제2항은 재난 노출자의 인적사항 및 노출정보뿐만 아니라 진료기록·투약정보·기저질환 등 건강정보와 사례관리 기록까지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별 재난 노출정보와 건강·의료 및 사례관리 정보가 광범위하

게 결합·축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8조제2항은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3항은 해당 정보의 수집·관리·보유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정보 중 재난 노출의 기간·강도, 사망 정보,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사례관리 기록 및 재난 관련 노출 지표(환경·기상·대기오염 등)의 경우 제3항 각 호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제3항제8호의 포괄적인 대통령령 위임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 간의 대응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제2항의 정보의 범위 및 제3항의 자료의 범위를 각각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외 법제적으로,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조 제목에 따른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이 아닌 “재난정보 보건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 제목에 맞추어 “재난보건 정보 시스템”으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 재난보건심의위원회(안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9조는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난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및 사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안 제10조는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9조(재난보건심의위원회)** ①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재난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재난건강영향평가의 기본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의 대상 재난 및 집단 선정, 기간, 조사방법, 주요지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역학, 예방의학, 임상의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보건·복지 행정, 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재난 노출자 또는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이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재난건강영향평가가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재난과 건강피해 간의 관련성, 조사대상·기간·지표 설정, 장기 추적조사 필요성 등을 의학·역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전문 영역이고, 그 결과가 재난노출자의 장기 추적관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안 제9조제2항제1호는 “제6조에 따른 재난건강영향평가의 기본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재난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라면 안 제6조 등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 등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가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재난건강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난보건심의위원회의

권한에 “의결”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재난안전법」 제9조<sup>11)</sup>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 위원회는 재난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비해, 제정안에 따른 재난보건 심의위원회는 보건·의학적 전문 영역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앙 안전관리위원회와 기능적으로 구별될 수 있음.

○ 한편, 제정안에 따른 재난에는 환경오염사고 및 감염병 관련 재난이 포함되는바,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sup>12)</sup>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 위원회<sup>13)</sup>와 기능적으로 일부 중첩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

11) 「재난안전법」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12) 「환경보건법」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라.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안 제11조는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노출자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정신건강 관련 복지서비스의 통합 지원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재난보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노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의 내용·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재난보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립·공립 정신병원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② 재난보건 수행기관은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난보건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재난보건 수행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안 제11조)

□ 안 제11조에 따른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는 개별 재난 노출자의 신체·정신건강 상태, 가족관계, 소득·주거·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이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선별하여 연계하고, 실제 이용 여부와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연계 가능한 보건의료·정신건강 서비스에는 건강검진, 진료·치료, 정신건강 상담 등이 있고, 복지서비스에는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돌봄서비스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도 재난으로 인한 실직 등의 경우 고용·직업훈련·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할 수 있음.

□ 이에 제정안에 따른 사례관리는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신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 법률과 사업에 따른 기존 보건의료·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재난 노출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통합적으

로 연계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됨.

□ 다만, 안 제11조는 사례관리의 대상을 “재난 노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2호의 재난 노출자에는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생명·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조·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영향권의 주민, 재난을 목격한 사람 등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음.

○ 이에 재난 노출자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사례관리의 경우에는 건강상태, 재난 노출 정도, 보건·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별 법률상 사례관리와 관련된 입법례를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sup>14)</sup>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관한 사회보

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의 사례관리가 재난 노출자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라는 차별성은 있으나, 기존 통합사례관리와 대상·기능이 상당 부분 중첩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제정안의 사례관리가 새로운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에 따른 사례관리와 현행 개별 법률에 따른 사례관리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제정안에 따른 사례관리가 질병관리청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고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연계·제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상 통합사례관리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존 사례관리 체계에 비추어 제정안과 같이 질병관리청장을 사례관리의 직접적인 실시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추가적으로, 안 제11조제1항은 사례관리의 실시 주체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하고 있어 각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아울러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의 유형이 도입되었음.<sup>15)</sup>

○ 따라서 안 제11조제1항의 사례관리 실시주체에 통합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전담인력 배치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재난보건 수행기관 지정(안 제12조)

□ 재난 노출자의 사례관리가 신체건강, 정신건강, 의료이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은 별도의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지역 보건·의료·정신건강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단위의 재난보

<sup>15)</sup>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건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를 통해 기존 지역보건·공공의료·정신건강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데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재난 노출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와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계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안 제12조는 재난보건 수행기관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지 않아 수행기관이 직접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선정하고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례관리를 보조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사례관리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복지수요 파악,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정신건강서비스의 제공·연계 및 사후관리 등 수행기관이 담당할 주요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안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재난보건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정신건강 관련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사실상 보건·의료기관 중심임.

- 그런데 안 제11조에 따른 사례관리는 재난 노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생계·주거·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 고용·직업훈련 등 노동 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연계·조정하는 기능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바, 안 제12조제2항에서 지역 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과 같이 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정할 경우 복합적인 지원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지정 대상에 사회복지 등 분야의 관련 기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지정권자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실제 지정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정권자를 안 제11조에 따라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와 일치시킬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3) 취약계층 우선지원(안 제13조)

□ 동일한 재난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의 신체상태, 경제적 여건, 사회적 지원체계 등에 따라 건강피해와 회복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안 제13조는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된 사례관리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재난안전법」도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특별히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3조는 사례관리의 우선 지원 대상을 “재난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11조는 “사례관리”의 대상을 “재난 노출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안 제2조제3호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재난 노출자 중 재난에 특히 취약한 계층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재난취약계층은 반드시 재난에 노출된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해석에 입각할 경우 재난에 노출되지 않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사례관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제11조에 따른 사례관리 대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노출자 중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 보칙 및 벌칙(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안 제14조는 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사례관리, 재난보건 정보시스템 위탁업무, 재난보건심의위원회 및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안 제15조는 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해고·징계·전보·차별적 처우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해당 평가 및 조사에 대한 참여를 방해하거나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며, 안 제16조는 비밀유지 의무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난보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14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 종사자
2. 제8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3. 재난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
4.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종사자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에 참여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②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비밀유지 의무(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재난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및 사례관리 등의 과정에서 재난 노출자의 건강·의료 및 사례관리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폭넓게 수집·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그런데 안 제14조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만을 금지하고 있는바, 재난 노출자의 건강·의료 및 사례관리 등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따라서 비밀의 누설과 함께 업무상 목적 외의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의 누설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14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각 호에서는 ‘직’이 아닌 업무 종사자, 기관 종사자 및 위원이라는 지위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법제적으로 유사 입법례16)를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안 제15조)

□ 안 제15조가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한 것은 재난 노출자가 이 법에 따른 재난건강영향평거나 장기 추적조사 등에 대한 참여를 이유로 신분상,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재난 건강영향평가 등에 대한 참여를 방해하거나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노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1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3.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4.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 참고로, 안 제15조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sup>17)</sup>에 따른 불이익조치의 내용 중 일부와 동일하나,

같은 법 제2조제6호 가목(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이익조치 유형별로 벌칙 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음.

□ 다만, 안 제15조제1항은 ‘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으로 규정하여 그 외의 사업(안 제11조에 따른 사례관리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로만 규정하고

---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있어, 제1항과 제2항에서 보호하려는 사업의 범위가 다르므로, 각 항의 문언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3) 벌칙(안 제16조)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sup>18)</sup>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안 제16조제1항제1호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낮은 법정 형이 적용되게 됨.
- 제정안이 누설을 금지하는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누설을 금지한 대상은 ‘개인정보’이므로 두 법률은 금지 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제정안에 따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재난 노출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투약정보, 기저질환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 대상이 중첩될 수 있음.

---

<sup>18)</sup>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한편, 보건의료 분야의 개별 법률들을 살펴보면,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의료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환자안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의료법」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복지 분야의 법률의 경우 제정안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입법례도 있음.

**<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법정형 >**

| 중첩 사례                           | 비밀유지 의무                 | 법정형                         |
|---------------------------------|-------------------------|-----------------------------|
| 제정안<br>(안 제14조, 제16조)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br>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개인정보 보호법」<br>(제59조, 제71조)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br>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의료법」<br>(제19조, 제88조)           | 의료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br>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br>(제10조, 제30조)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br>(제40조, 제60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
| 「환자안전법」<br>(제17조, 제18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
| 「청소년복지 지원법」<br>(제37조, 제43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br>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은 제정안에 따른 업무상 비밀에 개인정보 및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주요 보건의료 관계 법률의 비밀 보호 수준, 복지 분야의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은 안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임. 그런데 안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에는 사용자 또는 소속 기관의 인사·근로상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등에게도 불이익조치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제정안과 유사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sup>19)</sup>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한 행위자와 함께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안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을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서 “불이익조치를 한 자”로 수정하는 한편, 법인에 대해서도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 제5장(보칙 및 벌칙)에 양벌규정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안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sup>19)</sup>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관리청장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그런데 안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상대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서, 이들 기관 간의 자료제출은 행정기관 상호 간 협조의 성격을 가지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형벌은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관계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공 제한 또는 자료의 보유·관리 방식 등으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관 간 자료제출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안 제16조제2항의 벌칙 규정을 삭제하거나, 안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상대방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한 후 벌칙 부과 여부 및 수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제8조제3항과 유사하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는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약국·법인·단체·개인에게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9조의2는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경우의 형사처벌 대상을 의료기관·약국·법인·단체·개인으로 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있음.
- 특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한 입법례들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되, 자료제공 불응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부과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자료제출 요청 위반에 대한 벌칙 관련 입법례 >

| 법률                    | 주요 내용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 관한 다음</u> |

| 법률            | 주요 내용                                                                                                                                                                                                                                                                                               |
|---------------|-----------------------------------------------------------------------------------------------------------------------------------------------------------------------------------------------------------------------------------------------------------------------------------------------------|
|               | <p><b>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b>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4. <b>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b></p>                                                                         |
| 「환자안전법」       | <p>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b>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건 의료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b>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 별도의 벌칙 규정 없음</p>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p>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b>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b>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제6호·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 별도의 벌칙 규정 없음</p> |
| 「지역보건법」       | <p>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b>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법인·시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b>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법인·시설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 별도의 벌칙 규정 없음</p>      |

문 의 처

02)6788-5501